

2019.07.04

'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' 적용 입증서류 범위 확대 안내

I. 개요

관세청 내 '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 입증서류 범위 확대'와 관련한 공문이 배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II. 주요사항

1. 배경 및 취지

1) 통과선하증권 필수 제출

- 종전: 중국에서 출발하여 홍콩을 경유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APTA(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) 특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통과선하증권 필수 제출 해야하는 어려움

*** 통과선하증권 :** 운송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경유나 환적이 불가피한 경우,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

2) 입증서류 인정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 제기

- 최근 대법원내 통과선하증권 발급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체 서류로 직접 운송을 증빙할 수 있다고 판시 하는 등 입증 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 지속 제기

2019.07.04

'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' 적용 입증서류 범위 확대 안내

II. 주요사항

2. 시행 내용

1) 대상 국가

- 1976년 방콕협정으로 시작한 아시아·태평양 지역 국가 해당
- 현재 한국, 인도, 스리랑카, 방글라데시, 라오스, 중국으로 6개국 가입

2) 진행 현황

- 2019년 5월 한-홍콩 원산지협력회의에서 문제 논의
- 홍콩세관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및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협의
- 2019년 06월 24일 한-홍콩 관세당국 간 합의 완료
- 2019년 07월 02일 홍콩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 발급 개시
- 추후 APTA 외 다른 협정에 대해서도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홍콩 관세 당국과 지속적 협의 예정

3) 기대 효과

- APTA 특혜 세율을 적용 받기를 원하나 통과선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업체들이 홍콩세관에서 발급하는 비가공증명서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

◇ 시행일자 : 2019년 07월 02일

◇ 담당부서: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

이철재 과장 (042-481-3210) , 민병수 사무관 (042-481-3214)



보도일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배포일시 2019. 7. 2.(화) 09:00	담당부서 원산지지원담당관실		
담당과장 이철재 (042-481-3210)	담당자 민병수 사무관 (042-481-3214)		

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입증서류 범위 확대 - 중국 출발 홍콩 경유 수입화물, 홍콩에서 비가공증명서 발급 -

□ 관세청은 홍콩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7월 2일(화)부터 중국에서 출발하여 홍콩을 경유한 수입 화물에 대해 홍콩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.

○ 이로 인해 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(Asia-Pacific Trade Agreement, 이하 APTA)*을 원활히 적용받을 수 있는 직접 운송 입증서류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무역업계는 관련 협정의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.

* 1976년 방콕협정으로 시작한 아시아·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특혜 무역 협정으로 현재 회원국은 6개국임(한국·인도·스리랑카·방글라데시·라오스·중국)

□ 그동안 중국에서 출발하여 홍콩을 경유한 뒤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*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. 이는 경유국에서 거래나 소비되지 않고 단순포장 외의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.

*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경유나 환적이 불가피한 경우, 최초의

운송업자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

- 그러나 최근 들어 대법원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서류로 직접 운송을 증빙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입증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다.
- 이에 따라 관세청과 홍콩세관은 지난 5월 홍콩에서 개최된 한-홍콩 원산지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. 그 결과 중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으로 운송되는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해 홍콩세관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합의하고 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해 왔다.
- 지난 6월 24일 한-홍콩 관세당국 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직접운송 증빙서류의 인정범위가 확대되었다. APTA 특혜 세율을 적용받길 원하지만 통과선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업체들이 홍콩세관에서 발급하는 비가공증명서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.
- 관세청은 이번 APTA 외에 다른 협정에서도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홍콩 관세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